



국토교통부



수신 경기도지사(건설정책과장)

(경유)

제목 질의 회신(상시 운영하지 않는 사무실에 대한 처분 관련)

1. 경기도 건설정책과-14789(2020.8.6.)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.

2. 귀 도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
□ 질의 내용

- 등록기관이 건설사업자가 사무실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서울 등 타 시·도에 지사 사무실을 두고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반면 본사 사무실은 상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지?

□ 회신 내용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, 자본금, 보증가능금액, 시설(사무실 등)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,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인 본점을 기준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,
 - 등록기준 중 사무실*은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. 3. 라. 규정을 충족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하고 제3자가 판단할 때 형태, 입지, 계속이용 가능성 등의 제반 상황이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, 기술능력의 상주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질의의 사례와 같이 본사 사무실은 상시 운영하지 않으면서 ①본사 소재지(경기도) 외 서울 등 타 지역 내 지사 사무실을 두고 상시 운영하거나 ②경기도 내 타 시·군에서 임의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, 본사 사무실이 상기 규정에 따른 계속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등록기준 상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주무관

임대한

서기관

전결 2020. 8. 20.

김학원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업과-6468

(2020. 8. 20.)

접수 건설정책과-15683

(2020. 8. 20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1호

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546

팩스번호 044-201-5547

/ rurunolja@molit.go.kr

/ 대국민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